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

[시행 2011.12.8] [보건복지부령 제92호, 2011.12.8, 타법개정]

제6조(공중이 이용하는 시설) 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소유자·점유자 또는 관리자(이하 "소유자등"이라 한다)가 당해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당해 시설을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하여야 하는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(이하 "공중이용시설"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1999.10.28, 2003.4.1, 2005.7.28, 2006.4.25, 2008.10.10, 2009.8.12, 2011.12.8>

1.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용건축물,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
2. 「공연법」에 의한 객석수 300석이상의 공연장
3. 「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학원으로서 연면적 1천제곱미터이상의 학원
4. 「유통산업발전법」에 의하여 개설등록된 대규모점포와 동법에 의한 상점가중 지하도에 있는 상점가
5. 「관광진흥법」에 의한 관광숙박업소
6. 「초·중등교육법」 및 「고등교육법」에 의한 학교의 교사(校舍)
7. 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체육시설로서 1천명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
8. 「의료법」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, 「지역보건법」 제7조·제8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보건소·보건의료원·보건지소
9. 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의한 사회복지시설
10. 공항·여객부두·철도역·여객자동차터미널 등 교통관련시설의 대합실·승강장, 지하보도 및 16인승이상의 교통수단으로서 여객 또는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것
11. 「공중위생관리법」에 의한 목욕장
12. 「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소, 일반게임제공업소,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
13. 「식품위생법」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영업장의 넓이가 15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소, 일반음식점영업소 및 제과점영업소
14. 「청소년보호법」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만화대여업소
15. 「정부청사관리규정」 제2조에 따른 청사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
16. 「영유아보육법」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어린이집

제6조의2(금연구역의 지정기준 및 방법) ①공중이용시설중 청소년·환자 또는 어린이에게 흡연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시설 소유자등은 당해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. <개정 2006.4.25, 2011.12.8>

1. 제6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중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교사
2. 제6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, 보건소·보건의료원·보건지소
3. 제6조제16호의 규정에 의한 어린이집

②제1항에 따른 시설 외의 공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은 당해 시설중 이용자에게 흡연의 피해를 줄 수 있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. <개정 2005.7.28, 2006.4.25, 2008.10.10>

1. 제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사무실·실내작업장·회의장·강당 및 로비
2. 제6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연장의 객석, 관람객 대기실 및 사무실
3. 제6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학원의 강의실, 학생 대기실 및 휴게실
4. 제6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하도에 있는 상점가중 상품의 판매에 제공되는 매장 및 통로
5. 제6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숙박업소의 현관 및 로비
6. 제6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중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강의실, 휴게실, 강당, 구내식당 및 회의장
7. 제6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의 관람석 및 통로
8. 제6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의 거실, 작업실, 휴게실, 식당 및 사무실
9. 제6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교통관련시설 및 교통수단중 공항·여객선터미널·역사 등의 승객 대기실 및 승강장, 국내선항공기, 선실, 철도의 차량내부 및 통로, 전철의 지하역사·승강장 및 차량, 지하보도 및 16인승 이상의 승합자동차
10. 제6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목욕장의 탈의실 및 목욕탕 내부
11. 제6조제12호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소, 일반게임제공업소,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및 복합유통게

임제공업소의 영업장 내부 중 2분의 1 이상의 구역
12. 제6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휴게음식점, 일반음식점 및 제과점영업소의 영업장 내부중 2분의 1 이상의 구역
13. 제6조제14호의 규정에 의한 만화대여업소의 영업장 내부중 2분의 1 이상의 구역
14. 제6조제15호의 규정에 의한 청사의 사무실 및 민원인 대기실
15. 제1호 내지 제14호의 시설에 설치된 승강기의 내부, 복도, 화장실 그 밖에 다수인이 이용하는 구역

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유자등이 당해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당해 시설의 전체가 금연구역이라는 사실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 또는 부착하여야 한다.

④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소유자등이 당해 시설을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한 경우에는 금연구역 또는 흡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에 이를 알리는 표지를 설치 또는 부착하여야 한다.

⑤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의 표시 및 흡연구역의 시설기준은 별표 3과 같다.

[전문개정 2003.4.1]

[제7조에서 이동 <2011.12.8>]